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64
----------	-------

발의연월일 : 2025. 11. 21.

발 의 자 : 전진숙 · 오세희 · 장종태
장철민 · 남인순 · 김한규
이수진 · 이개호 · 김남희
김정호 · 이인영 · 전용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피해자는 대부분 가해자와 가족·배우자 관계 등 친밀한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특성상, 가해자의 처분이나 석방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면 재접근·보복 범죄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위험이 있음.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잠정조치 및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자의 훈방, 불기소, 보호처분 종료, 가석방, 석방 등에 대한 자동통지 규정이 부재하여, 피해자가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의 처분·석방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송치”를 “송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입건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종결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때에는 그 보호시설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형태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절차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의 요건과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 및 제11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

이 취소되거나 그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9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장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이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에 있어서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7조의 제목 중 “종료”를 “종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때에는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에 있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절차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의 요건과 방식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생략)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입건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종결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때에는 그 보호시설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신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

<u><신 설></u> 제29조(임시조치) ① . ② (생략)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u>경우에는</u>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⑫ (생략) 제29조의2(임시조치의 집행 등) ① . ② (생략) <u><신 설></u> <u><신 설></u>	<u>용하여 전자문서의 형태로 통지할 수 있다.</u>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절차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의 요건과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임시조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경우 및 제11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이 취소되거나 그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u>----- -----.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임시조치의 집행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장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이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에 있어서는
--	---

제47조(보호처분의 <u>종료</u>) (생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u> 제47조(보호처분의 <u>종료 등</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때에는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의 통지에 있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u> <u>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절차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의 요건과 방식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u>
---	--